

## ◎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-031호

「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2년 04월 1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### 「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(2021. 10. 19. 공포)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(목적) 이행강제금 부과와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(시행령 안 제43조 제7항)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
- 나. (부과 기준 등) 법령에 규정된 부과기준, 부과대상 기간, 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재규정(제정안 제2내지4조)
- 다. (사전통지)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 부여(제정안 제5조)
- 라. (이의제기)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(제정안 제6조)
- 마. (기타사항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별지 서식 마련(제정안 제7조 등)

#### 3. 의견제출

- 가. 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앞
- 나. 팩스 / 전자우편(E-mail) : 02-2110-0140 / doktank86@korea.kr
- 다. 기한 :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,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  -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(전화 02-2110-1514, 팩스 02-2110-01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cc.go.kr>) 「정책/정보센터-법령정보-입법예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